

5. 대구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19년 10월 25일
- 제출자 : 대구광역시장(기획조정실장)
- 회부일자 : 2019년 10월 31일
- 상정일자 : 제271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9년 11월 21일), 원안 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 제안이유

-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에서 지방공사·공단 임원의 정수를 조례가 아닌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법률에 맞게 개정하고,
- 「지방공기업법」 제82조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과태료 부과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안 제7조는 임원 중 12명 이내의 이사, 1명의 감사를 정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임원의 수를 대구시설공단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 조례안 제32조는 「지방공기업법」 제8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 상기 조례안을 제외한 기타 모든 규정들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3. 검토보고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곽영구)

○ 조례안 개정의 목적은

- ▶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위반되는 내용으로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구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임원의 정수 상한선과 공단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불이익 처분 조항의 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 안 제7조에서는 법 제58조제1항8)과 달리 ‘이사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는 것으로 공단 임원 정수의

8) 제58조(임원의 임면 등)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상한선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가 상위법에 위반됨에 따라 임원의 정수를 상위법에 맞추어 정관으로 정하도록 정비하였음.

- ▶ 안 제32조에서는 법 제82조⁹⁾의 개정(2015.12.15.)으로 지방공기업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이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음.
- ▶ 그 밖에 조례 전반에 걸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한자식 또는 일본식 용어와 문장구조를 정비하였음.
- ▶ 이번 개정안 제출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이 공단의 권한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을 정비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¹⁰⁾의 위반 소지를 없애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과태료 부과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의 법률 적합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
- ▶ 그러나, 공단을 대상으로 현행 조례에 의한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 처분은 없었으며, 향후에는 상위법의 제·개정 사항을 신속하게 조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9) 제82조(과태료)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제73조제2항(제7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10)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5. 토론요지

없음

6. 수정안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원안 가결(재석의원 전원찬성)

8. 소수의견 요지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